환경부 보도 설명자료	제공일	2019년 10월 30일
	소관부서	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
	담당자	성수호 과장/박은혜 사무관 (044-201-6790/6798)

제목 :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, 주기적인 실내공기질 기준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

[이데일리 2019.10.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지하철 차량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추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2019.10.30일 이데일리 <오늘도 미세먼지 싣고 달리는 지하철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①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고, 측정 시기·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

② 취약계층 이용시설(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,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, 노인요양시설)에 적용되는 엄격한 공기질 기준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빠져 있어 선언적 의미에 그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

①에 대하여

○ 금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(PM2.5)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강화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

-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 의무화, 초미세먼지 권고기준(50㎍/㎥) 설정과 함께 지하철 차량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
-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음
- 한편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시기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'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*'을 개정하여 반영할 계획

  *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,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, 시간, 측정장비 종류 등 세부사항 규정

②에 대하여

○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공기질 기준은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

- 이들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,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

[참고]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)

(단위 : ㎍/㎥)

구분	일반시설	취약계층 이용시설
미세먼지(PM10)	100	75
초미세먼지(PM2.5)	50	35
폼알데하이드	100	80